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

# 제안 설명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하여 5대 공사 및 공단 즉,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기업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함께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자체적인 감사 조직을 통해 해당 기관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설립한 공기업은 업무상, 인사상 각종 비리가 발생하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 행정의 신뢰 저하와 함께 공기업의 방만 운영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은 다음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울시 5대 공사 및 공단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위해 서울시장은 「규칙」에서 정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사·공단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결산서 등을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가 독립적인 절차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및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으로 법제화함으로써 공기업의 투명운영과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과 여러 동료·선배의원님들과 함께,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사항을 명확히 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기업의 회계감사를 강화함으로써 공기업 운영의 효율화 및 공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과 동료·선배의원님들의 발의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